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4. 3(화) / 총 5매(본문 3, 붙임 2)
담당 부서	건설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김영한, 사무관 이창훈, 주무관 박장근 ·☎ (044)201-3507, 3508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3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, 6월부터 발주 임금삭감 방지를 통해 질 좋은 건설일자리 창출

-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‘적정임금제 시범사업’이 본격 추진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, 금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며,
 -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, 공사비 영향,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한 뒤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(’20년 예정)이라고 밝혔다.
- 적정임금제(Prevailing Wage)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, 원도급사-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,
 - 지난해 12월 ‘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’을 통해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.
 - * (’18~’19년) 매년 10개소 시범사업 + 시범사업 성과평가 +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
→ (’19.上) 관계부처 T/F 구축 → (’20.上) 관계법령 개정 후 본격 시행
- 금년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건축공사 2건,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되었으며,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4건, 한국도로공사가 3건,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,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.(붙임 참조)
-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 1,200억 원 규모로서 해당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,400억 원에 이른다.

□ **적정임금제** 시범사업은 **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**으로 시행하여 성과를 비교·분석할 예정이며,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**노무비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**하여 추진한다.

① (**노무비 경쟁방식**) 노무비(노무단가×노무량) 중 **노무단가 삭감**을 제한하고,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은 가능한 방식으로,

- 건설사가 노무비 증가분을 고려하여 입찰하도록 시범사업과 유사한 건축·토목공사의 노무비 지출내역 분석을 거쳐 **가격평가 기준을 보완**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
* 장점: 공사비 절감 가능, 단점: 투입인력감소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 가능

② (**노무비 비경쟁방식**) 노무비를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하고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를 **100% 투찰**하도록 하는 방식으로,

- 공사 중에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노무비만큼 확인을 거쳐 노무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.

* 장점: 근로자 처우개선 효과 큼, 단점: 공사비 증가폭이 큼

□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누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.

-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,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**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**(하도급 지킴이 등), **전자카드제** 등을 함께 적용하고,

-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**2년간 입찰상 불이익**(중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)을 부과할 방침이다.

○ 아울러, 일급(日給)에 연장·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(포괄 임금제)함으로써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하여 적용한다.

○ 또한,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 증가와 연동하여 상향 조정한다.

* 하도급계약심사(입찰시), 하도급적정성심사(공사중)의 저가 기준 82% 상향

□ 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계획으로,

○ 시범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,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위한 후속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 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도 확정하는 등 '건설일자리 개선 대책'을 조기에 가시화하여

○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, 소득수준 제고,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건설일 자리를 창출하고,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한편,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※ 붙임1. 대상사업 개요

붙임2. 시범사업 방식 비교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이창훈 사무관(☎ 044-201-350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발주 기관	사업개요	공사비 (노무비)	발주	공사 기간	사업 모델
LH	· (건축) 부천상동 주15BL 아파트 건설공사(행복주택, 630호)	407억원 (171억원)	'18.6	'18.10 ~ '21.8 (35개월)	1안
	· (건축) 행정중심복합도시 3-3M2BL 아파트 건설공사(국민임대, 1,100호)	649억원 (273억원)	'18.8	'18.12 ~ '20.4 (29개월)	2안
	· (토목) 시흥 목감지구 목감~수암간 도로확장공사(2.38km)	348억원 (146억원)	'18.6	'18.9 ~ '20.8 (24개월)	1안
	· (토목)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(진주지구, 821천m ²)	537억원 (225억원)	'18.10	'18.12 ~ '22.6 (43개월)	2안
도로 공사	· (토목)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~ 파주간 건설공사 제3공구(5.06km)	1,902억원 (445억원)	'18.6	'18.10 ~ '25.10 (84개월)	1안
	· (토목)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~ 파주간 건설공사 제4공구(3.64km)	1,378억원 (325억원)	'18.6	'18.10 ~ '25.10 (84개월)	1안
	· (토목)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~ 파주간 건설공사 제5공구(4.31km)	1,276억원 (277억원)	'18.6	'18.10 ~ '25.10 (84개월)	2안
수자원 공사	· (토목) 송산 그린시티 남측지구 3공구 조성공사(약1.31km ²)	989억원 (246억원)	'18.6	'18.11 ~ '26.10 (96개월)	2안
철도 공단	· (토목) 삼성~동탄 광역급행철도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(2.999km)	1,700억원 (641억원)	'18.6	'18.8 ~ '21.12 (41개월)	2안
	· (토목) 삼성~동탄 광역급행철도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(1.290km)	2,017억원 (715억원)	'18.6	'18.8 ~ '21.12 (41개월)	1안

방식	(1안) 노무비 경쟁 방식	(2안) 노무비 비경쟁 방식
입찰 방식	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등 $\times$ 낙찰률 + α α : 적정임금 시행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낙찰률에 반영	재료비 경비 이윤 등 $\times$ 낙찰률 노무비 → 경쟁제외
공사비	노무비를 포함한 입찰금액 (입찰 시 확정)	노무비를 제외한 입찰금액 + 실제 지급한 노무비(준공시 확정)
노무비 관 리	다른 비용과 노무비를 함께 관리 (발주자는 노무단가 준수만 확인)	다른 비용과 노무비를 구분관리 (노무비는 업체 청구에 따라 지급)
장 점	기술경쟁을 통한 공사비 절감가능	노무비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하여 근로자 처우개선 효과가 큼
단 점	건설업체가 인력투입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높일 가능성	공사비 증가폭이 크고 건설업체의 노무비 허위청구도 우려
공 통 사 항	노무비 허위청구 방지,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단가 지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,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등을 함께 적용	